의 안 번 호

1623

【울산광역시 중구 액회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가. 제 출 일 자 : 2020. 4. 29.(수)

나. 제 출 자 : 중구청장

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0. 5. 1.(금)

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0. 5. 13.(수)

2. 제안이유

O 상위 법령인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개정(2019. 8. 20)으로 해당조문이 이동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개정사항 반영 (제6조제2항 → 제6조제3항)
- 나. 조례제정 목적의 근거법령 개정사항 반영(안 제1조)
- 다. 허가기준의 근거법령 개정사항 반영(안 제4조)

4. 근거법규

○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제6조제3항(허가기준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」개 정으로 관련법 적용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 하는 조례로서,
-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근 거 법 규

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

제6조(허가의 기준) ① (생략)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.
- 1. 사업이 공공의 이익과 일반 수요에 적합한 경제 규모일 것
- 2. 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(財源)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
- 3. 액화석유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적합한 공급시설을 설치·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
- 4. 소유 또는 임차계약 등에 따라 배관망공급시설을 사용·관리할 수 있는 권 리가 있을 것
-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〈개정 2019. 8. 20.〉
- ④ 제2항에 따른 허가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. 〈신설 2019. 8. 20.〉
- ⑤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 기준의 범위에서 지역 특성에 적합하도록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거나 공급권역을 설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 이 경우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